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업제한기관 확대 등〉

■ 권인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577호)

2022.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법적 용어 정비 등	3
2. 취업제한기관 확대 등	9
※ 참고자료	22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 규정	2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인숙 · 강득구 · 김정호 · 소병철 · 안호영 · 용혜인 ·
유정주 · 윤미향 · 윤영덕 · 이규민 · 이수진(비)의원
(11인)

나. 발 의 일 : 2021. 9. 15.

다. 회 부 일 : 2021. 9.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는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범위가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되어 왔음.

그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이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된 기관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아동·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56조, 제57조).

한편, 범죄의 처벌형을 규정하는 조문의 체계적 완비성을 위하여 해

당 징역형의 범위가 ‘무기’인지 ‘유기’인지에 관해 정확한 법적 표현을 사용하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처벌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본법의 입법 목적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규정에 연령 개념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32조).

Ⅲ. 검토의견

1. 법적 용어 정비 등

개정안은 징역형의 표현 명확화, 공소시효 특례 대상 명확화, 양벌 규정 정리 등 법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u>유기징역</u> 에 처한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 ----- ----- <u>징역</u> <u>에</u>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u>유기징역</u> 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 ----- ----- <u>징역</u> <u>에</u>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u>징역</u> 에 처한다.	② ----- ----- ----- ----- ----- <u>유기징역</u> <u>에</u> -----.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③ ----- ----- -----

현행	개정안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u>징역</u>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u>징역</u>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u>징역</u>에 처한다. ⑥·⑦ (생략)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u>유기징역</u>에 처한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u>사람</u>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	-----<u>유기징역</u>에----- -----. ④ ----- ----- ----- ----- -----<u>유기징역</u>에-----. ⑤ ----- ----- ----- -----<u>유기징역</u>에-----.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 ----- ----- -----<u>징역</u>에-----.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아동·청소년</u>에----- ----- ----- -----

현행	개정안
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11조제3</u> <u>항·제5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u> <u>2항·제3항</u> 또는 <u>제31조제3항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u>제11조제</u> <u>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2</u> <u>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u> 또는 <u>제15조제1항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 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양벌규정) ----- ----- ----- ----- <u>제14조제3</u> <u>항</u> ----- ----- ----- ----- <u>제11조제1</u> <u>항부터 제6항까지</u> ----- ----- ----- ----- ----- ----- -----.

가. ‘징역’ 표현 정비

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및 제16조는 법정형에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함께 규정된 경우 또는 상한이 있는 유기징역만 규정된 경우에는 ‘유기’ 표현을 제외하고 하한이 있는 유기징역만 규정된 경우에는 ‘유기’ 표현을 포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비교 >

현행	개정안
‘무기징역 또는 n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n년 이상의 징역’
‘n년 이상의 징역’	‘n년 이상의 유기징역’
‘n년 이하의 유기징역’	‘n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할 때는 ‘무기’ 표현을 사용하여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n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더라도 유기징역임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유기’ 표현을 포함하는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¹⁾.

1)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규정할 경우 이것이 무기징역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는데, 실제 「형법」·특별형법 및 행정형법에서 유기징역이 아닌 무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할 때 “무기”로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규정하더라도 이를 무기징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는 법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면서 유기징역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19, pp.664-665.)

○예시

- 「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91조(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나. 공소시효 특례 대상 정비

안 제20조제3항은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대상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 죄를 범한 경우에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특정 죄를 범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본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해자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경우 아동·청소년이 아닌 19세 이상의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명시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 벌금형 정비

안 제32조는 법인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제3항·제5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는 것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11조제3항·제5항은 본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²⁾ ‘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 제11조 개정 현황 >

당 조문의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보임.

개정 전	개정 후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u>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u>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

주: 2020.6.2. 개정

2. 취업제한기관 확대 등

개정안은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제한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자등에 대한 점검·확인기관을 사무 관할에 따라 정비하려는 내용임.

[illegible]

현행	개정안
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 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 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쉼터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 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 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6의2. ~ 8. (생략)	6의2. ~ 8. (현행과 같음)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 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신설>	9. ----- -----제9조의 성매 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과-- -----
10. ~ 22. (생략)	9의2. 제47조에 따른 아동·청소 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제 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 동·청소년 지원센터
② ~ ⑥ (생략)	10. ~ 22.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 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 중인 자 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취 업자등에----- -----취업자등 인-----

현행	개정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 ----- ----- ----- ----- --. ⑧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 같은 항 제21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고용하여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 같은 항 제21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취업자등에 대해서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자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 같은 항 제21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 같은 항 제21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생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 -----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삭 제>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③ ----- ----- ----- ----- -----

현행	개정안
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56조제1항제6호의 <u>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u> <u><신설></u> 3. 4. (생략) 5. 제56조제1항제9호의 <u>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u> <u><신설></u> 6. ~ 12. (생략) 13. 제56조제1항제18호의 <u>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u> <u><신설></u> ④ ~ ⑥ (생략)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56조제1항제6호의 <u>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u> 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u> 3. 4. (현행과 같음) 5. -----<u>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u>-----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u>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6. ~ 12. (현행과 같음) <u><삭제></u> 14. 제56조제1항제22호의 <u>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u> ④ ~ ⑥ (현행과 같음)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³⁾,

안 제56조는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자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특례를 확대하며, 안 제57조는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기관을 사무 관할 및 확대되는 취업제한기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가. 취업제한기관 확대(안 제56조제1항)

안 제56조제1항은 취업제한기관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제6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제9호),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제9호의2)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⁴⁾, 청소년복지시설⁵⁾,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3) [참고자료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 규정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지원시설⁶⁾, 성교육 전문기관⁷⁾,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⁸⁾에서는 교육 강사, 상담사 등 기관 종사자가 아동·청소년과 24시간 또는 장기간 빈번하게 접촉 및 교류를 하게 되는바,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해 보임.

-
-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6.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확대하려는 취업제한기관의 지원 기능 >

기관	지원 기능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청소년 등 만 9세~24세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교과목 교육, 사회문화체험,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행 등 지원 ○한국어특화형·진학준비형 프로그램의 경우 2학기 동안 최대 400시간(시간제) 또는 800시간(전일제)으로, 진로특화형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260시간(시간제) 또는 340시간(전일제)으로 구성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구분되는데, 현행 청소년쉼터에서 확대하려는 것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후 추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등 사례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2년의 사례관리와 최대 1년 6개월의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관 ○생활형, 이용형, 혼합형으로 구분
	청소년 치료재활 센터	○정서·행동에 어려움(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교부적응 등)이 있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밀착형 시설 ○생활공동체 활동, 정신의학적 상담, 대안학교 수강 등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	○감호위탁 처분(「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을 받은 청소년에게 선도·훈육, 생활지원, 학업·진로지원 등 부모 대신 보호 청소년을 감호하는 24시간 생활시설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 생활시설로 구분되는데, 현행 청소년 지원시설에서 확대하려는 것 ○네 시설 모두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숙식 제공, 자립·자활 지원을 하는 생활형 시설이며,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은 주변에 청소년 지원시설이 없는 경우 다른 유형의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음	
성교육 전문기관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사무실 형태의 고정형, 버스 내에서 진행하는 이동형으로 구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하여, 상담 지원, 치료비 지원 및 병원 동행, 수사 동행, 학업·취업 지원, 전문 상담 지원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	

나. 성범죄 경력 조회 특례 확대(안 제56조제7·8항)

현행법 제56조제7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마친 취업 중인 자가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56조제7항은 성범죄 경력 조회 특례 대상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취업 중인 자’에서 ‘취업자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은 ‘취업 중인 자’뿐만 아니라 ‘취업자등’ 전체에 해당하는바⁹⁾,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특례를 적용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해 보임.

안 제56조제8항은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직무를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교육장이 고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에 각 교육기관의 장은 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려는 것임.

과거와 달리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 강사 등을 직접 채용하기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보다는 교육청에서 일괄 모집하여 각 교육기관에 파견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강사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함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교육기관 지원 인력을 총괄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일괄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교육기관의 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 제56조제5항에서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 기관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경우에도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대신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위탁 교육기관(제1항제2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학생상담지원 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제1항제2호의2),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제1항제21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통상 지원하는 다른 유형의 교육기관도 있음을 고려하여¹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대신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유치원(제1항제1호), 장애인등을 위한 특수교육지원 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제1항제19호)도 포함하여 수정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청마다 지원 인력을 관리하는 방식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의견¹¹⁾을 참고하여 ‘고용’이 아닌 ‘모집’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0) 여성가족부

11) 여성가족부

다.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기관 정비(안 제57조)

안 제57조는 안 제56조제1항에 따라 확대되는 취업제한기관에 맞추어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관할에 따라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 주체를 정비하려는 것임.

먼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안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될 경우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 대상기관에도 포함될 필요가 있으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하고 있으므로¹²⁾ 점검·확인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다음, 최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을 개정(2020. 2. 18. 개정, 2021. 1. 1. 시행)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관할에 따라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 주체가 일괄 정비되었으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의 경우 설치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등 여성가족부장관의 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이 관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춰 점검·확인 주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해 보임.

<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관련 개정안 및 수정의견 >

개정취지	점검대상기관	현행(점검주체)	개정안(점검주체)	수정의견(점검주체)
취업제한기관 확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	지자체장 (제3항제2호)	여가부 장관 (제1항제3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포함)	-	지자체장 (제3항제2호)	-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성매매 청소년 지원시설 포함)	-	지자체장 (제3항제5호)	-
	성교육 전문기관	-	지자체장 (제3항제5호의2)	-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지자체장 (제3항제5호의2)	-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업무의 관할 반영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지자체장 (제3항제13호)	여가부장관 (제1항제3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여가부 장관 (제1항제3호)	지자체장 (제3항제2호의2)	-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식약처장 (제1항제4호)	지자체장 (제3항제14호)	-

문 의 처
02)6788-5644

[참고자료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 규정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2021. 1. 12.>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0호의 공공시설
3.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3.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4. 제56조제1항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제56조제1항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6.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7. 제56조제1항제11호의 체육시설
8. 제56조제1항제12호의 의료기관
9. 제56조제1항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을 하는 사업장

10. 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2. 제56조제1항제17호의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13. 제56조제1항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3. 제56조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국제학교
 5. 제56조제1항제3호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6. 제56조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7. 제56조제1항제21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2. 18.]